

문서번호	환경교통팀-972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7.04.21
공개여부	공개

★담당자	팀장	환경관리본부장	사장
한성수	김인수	박병준	04/21 박현출
협 조	팀장 팀장 담당	김태환 권상구 강경우	
감 사			

**제2주차건물 차량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
대응 계획**

2017. 4.

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
환경교통팀

제2주차건물 차량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 대응 계획

< 추진 목적 >

제2주차건물에서 주차 중 발생한 차량사고(`14.2.16)에 대해 보험사간 합의 추진 및 소액사건심판 답변서 제출을 통해 처리코자 함

I 사건 개요

■ 사고 경위

- 일 시 : 2014. 2. 16. 18:50 경
- 장 소 : 제2주차건물 2층 주차장 내
- 사고자 : 체어맨 / 운전자 : ***
 - 구상권자 : 한화손해보험(주)(담당 : 강남보상팀)
- 사고내용
 - 사고차량이 제2주차건물 2층에서 후진으로 주차 중 뒤쪽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(벤츠) 후면 부분을 사고차량 후면으로 충격 파손시킴
- 사고원인(사고자 및 보험사 측 주장)
 - 주차블럭(스톱퍼)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바퀴가 주차블럭에 닿기 전에 피해차량의 후면 범퍼 부분을 접촉하였음
 - 주차블럭 위치 간격을 너무 짧게 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

■ 사고 후 조치

- 사고자는 공사에 별도의 신고 없이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차량 손해 배상
- 사고자 보험사는 `14.2.20.에 피해자에 대해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(1,672천원)

II 소액심판 내용

■ 사건번호 : 서울남부지법 2017가소350940 구상금

■ 당사자 : 한화손해보험(원고) / 공사(피고)

■ 청구취지

- 차량수리비 및 렌트비(1,672천원), 민사이자 및 법정이자 청구
- 소송비용 및 가집행 허가 청구

III 소액심판 대응 추진

■ 공사 재산종합보험 통한 합의처리 추진

- 당초 보험사에서 보험시효(2년) 경과로 면책 주장¹⁾
- 공사에서 사고여부를 인정한 것이 소장송달일(2.24)임을 주장하여 보험처리 합의²⁾
 - 원고 보험사 및 사고자 측에서 과실비율 부정하고 있어 지속 설득 중
 - ※ 사고일은 삼성화재 주관의 재산종합보험 가입 기간임(`13.7.19~`14.7.19)

■ 답변서 제출

- 주위적청구 : 시설물의 하자 없음
 - 주차블럭은 법정 설치사항 아니고 시설물 보호 및 주차편의를 위한 것이며 사고자의 후방주시의무 태만이 사고의 원인임
- 예비적청구 : 과실상계(사고자 90%, 공사 10%)
 - 주차블럭에 대한 공작물소유자책임(민법 제758조)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자의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90% 이상임

1) 개정 전 상법 제662조 제1항, 부칙<법률 제12397호> 제2조 제4항

2) 민법 제166조제1항, 보험청구권의 행사시기는 사고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임

IV

향후 계획

■ 심판 종결 후 보험처리

- 심판절차 종료 후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
 - 공사부담금 10만원, 초과분은 삼성화재에서 지급

■ 전자소송 관련 절차 진행

- 답변서 제출 및 기일통지 수령 등(기획팀 협조)

■ 가락시장 내 주차블럭 실태 일제점검

- 멸실, 손상, 사고위험 등 주차블럭 실태 점검 후 유지보수 시행
(시설안전팀 협조)

끝.